

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른 점합제한 및 전자출입명부 이무적용시설



시설유형	고위험시설	
음식점	헌팅포차, 감성주점 뷔페(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)	
유형시설	유형주점(클럽, 룸살롱 등), 단란주점, 콜리텍	
여가시설	노래연습장	
체육시설	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 * GX(Group Exercise) : 춤바, 태보, 스피닝 등	
공연시설	실내 스탠딩공연장 (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)	
사업장	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방문판매, 다단계판매, 후원방문업체), 유통물류센터	
교육시설	대학학원(일시수용인원 3000인 이상)	
수도권 추가 (서울 인천 경기)	학원	학교교과교습학원(3000인 이상), 평생직업학원(전제) * 30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서, 또 교육성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
	PC방	PC방

* 집합금지외 제민시설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

안전신문고 신고방법



우수하거나 신고건수가 많은 신고자와 제민자에게는 포상금 또는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
- 안전신문고 앱을 Play 스토어, App Store에서 다운 받아 신고하세요.
- 제민내용이 길 경우, 기급적 안전신문고 포털(www.safetyreport.go.kr)로 신고해주세요.



#특별민예
#감사합니다



코로나19 위험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합시다!



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 (시설, 사람, 공간, 모임, 행위 등)

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안

※ 단속현 미소요 미연상 등 일방적 행정 신고는 제외
※ 우수신고와 제민에는 포상금 또는 상품 지급



행정안전부



세종특별자치시

1

집합금지·제한 조치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



3

밀폐 장소에서 밀집하여 밀집한 행위가 일어난는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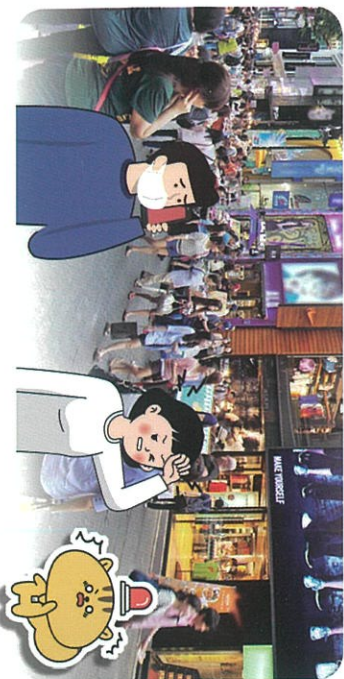
5

영업, 집회·모임, 특정 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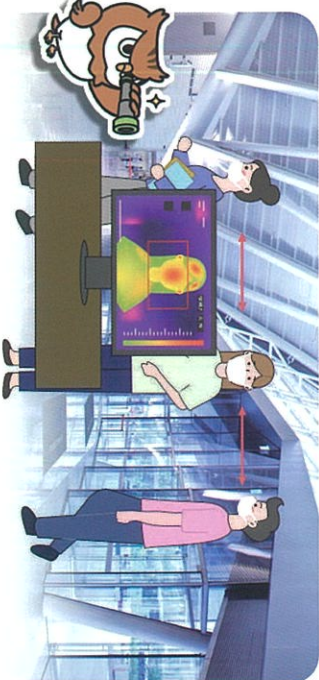
2

자기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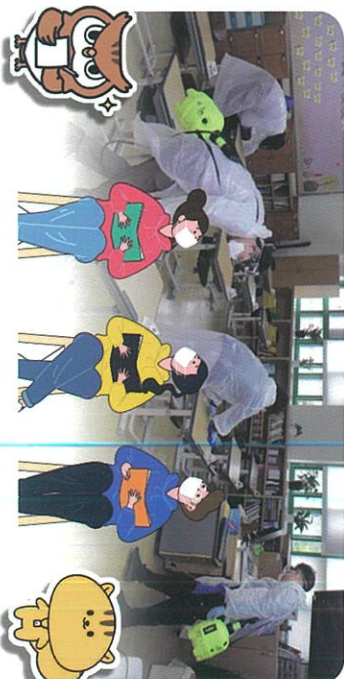
4

출입자 관리(발열체크, 명부 작성),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환기·소독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·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



6

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



정부가 자기격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**집합금지·제한 조치 시설** 예) 유흥주점, 단란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시설, 실내스탠딩공연장 등

* 시기별 지자체별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이 다를 수 있음

환기가 잘안되는 **밀폐된 장소**,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, 침방울이 튀거나 **신체 접촉**이 많은 행위를 하는 경우!

* 소규모 사람이 장기간 모이는 경우 포함

기념촬영 시 마스크를 벗고 '파이팅' 구호를 외치는 것은 위험해요!

모두를 위해 필요한 자기격리, 이탈자를 발견한다면 꼭 알려주세요!

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성 행위는 신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안전신문고에 보내주세요!